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604
------	------

2025.04.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임춘대 의원(찬성자 15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임춘대 의원)

1. 제안이유

-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은

부족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신성장동력 산업인 핀테크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2. 핀테크산업 현황과 조례안의 입법배경

-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비롯하여 디지털은행까지 광범위한 확장성을 갖춘 신산업 분야임.
-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화두 중 하나로 부상한 핀테크는 빠르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전통적인 금융업을 해체하는 등 금융혁신을 주도하고 있음.¹⁾
- 한편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2024년 글로벌 핀테크 투자 규모는 956억달러로 2023년 1,198억달러에 비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3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국내 핀테크산업은 2014년 말부터 금융권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규제 완화, 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용도, 기업들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 노력 등에 따라 2014년 131개에서 2023년 635개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²⁾.
- 그러나 B2C(Business to Consumer)³⁾ 모델을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국내 핀테크산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국내 내수 규모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등이 핀테크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음.⁴⁾
- 다만 서비스 고도화 및 해외진출의 기반이 되는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많은 국내 핀테크기업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바, 투자처 확보를 위한 기업의 기술 혁신 노력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투자유치 지원 전략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한편 서울시는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핀테크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한 이래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핀테크랩(2018. 04 개관)과 제2핀테크랩(2023. 01. 개관) 운영, 지자체 최초 핀테크 교육사업인 서울핀테크아카데미(2018년 최초 개최), 핀테크산업 관련 글로벌 네트워킹을 위한 서울핀테크워크(2023년 최초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기업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한국핀테크지원센터(2024), 「2023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편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3) 기업이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핀테크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기술, 데이터,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B2B와 구분됨.

4) 삼정KPMG(2024), 「2024 한국핀테크 동향보고서」.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5) 2006년 '서울국제금융 컨퍼런스'로 시작했으며 2023년부터 서울핀테크워크로 행사명을 변경해 핀테크 산업을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개최하고 있음.

- 그 결과 서울시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635개 핀테크기업의 75.6%에 해당하는 480개 기업이 위치할 정도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핀테크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

< 핀테크산업 지원정책 개요 >

서울핀테크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2018년 4월 ▪ 소재: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위워크 여의도점 6개층-4·5·6·8·17·19층) ▪ 기업지원: 성장기(창업 7년 이내) 핀테크기업의 스케일업 및 예비유니콘 기업 육성 ▪ 입주기업: 97개사 ▪ 운영: 민간위탁(수탁기관: (유)제피러스랩, 위탁기간: '24.4.~'26.12.) ▪ 실적(2024년): 기업매출 1,515억원, 투자유치 770억원, 고용창출 738명 ▪ 2025년 예산: 8,044,491천원
제2서울핀테크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2023년 1월 ▪ 소재: 마포구 마포대로 78 자람빌딩 8층, 11층 ▪ 기업지원: 초기(창업3년 이내) 핀테크기업의 발굴 및 육성, 성장지원 ▪ 입주기업: 31개사 ▪ 운영: 민간위탁(수탁기관: 씨앤티테크, 위탁기간: '25.1.~'26.12.) ▪ 실적(2024년): 기업매출 108억원, 투자유치 42억원, 고용창출 63명 ▪ 25025년 예산: 2,067,296천원
서울 핀테크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금융·핀테크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 내용: 핀테크산업 분야의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운영: 디지털금융 전문 교육기관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18~'24년): 핀테크 분야별 고급 실무인력 공급 확대, 총 534명 수료 ▪ 2025년 예산: 173,000천원
서울핀테크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국내외 금융기관·투자사, AI·핀테크산업 관계자 등 ▪ 내용: 컨퍼런스, 투자유치·네트워킹, 대시민 프로그램 등 핀테크산업의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운영: 용역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 실적('23~'24년): 참석인원 9,797명(현장 2,467명, 온라인 7,330) ▪ 2025년 예산: 400,000천원

-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핀테크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관련 기업 육성 등을 위한 직접적인 근거가 아닌 「서울 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 방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핀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서울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핀테크산업의 육성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핀테크산업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핀테크산업을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의 규정은 조례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음.⁶⁾
- 현재 핀테크산업은 널리 통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적인 정의가 없고, 관련 법령 등에서도 핀테크 및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2조는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기술과의 융합이 가능해 그 범위가 현재보다 확장될 수 있는 핀테크 산업의 특성상 이를 협의로 정의할 경우 조례 제정 당시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련 유망 기업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는 핀테크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산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에서 핀테크산업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안 제7조는 유망 핀테크기업의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산업

6) 법제처(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자금조달, 투자처 확보, 네트워킹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핀테크기업을 발굴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핀테크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또한 국내 핀테크산업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로 인해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이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핀테크기업이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처 및 해외 바이어 발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

라.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안 제8조 및 제9조)

-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정책 현안 등을 자문하기 위한 ‘핀테크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 외에 위촉직 위원으로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함.

- 그리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바,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⁷⁾의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원칙’ 을 충족하고 있음.
- 또한 핀테크산업 분야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⁸⁾의 위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4. 종합의견

-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아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그러나 서울시의 핀테크 지원 정책은 직접적인 법·제도적 근거가 아닌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 방침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핀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임.

7)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에 동 조례안은 전세계 금융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인 핀테크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통해 핀테크산업의 성장과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입법·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춘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60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임춘대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박성연, 윤영희, 이성배,
이원형, 이희원, 최민규
의원(15명)

1. 제안이유

- 금융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산업은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국내 핀테크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의 역할은 부족해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유망한 국내 핀테크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핀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핀테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핀테크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신기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핀테크기업”이란 핀테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핀테크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핀테크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핀테크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핀테크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핀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4. 핀테크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제공
2. 핀테크산업과 관련된 창업·경영에 관련된 상담·교육 및 정보 제공
3. 핀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4. 핀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핀테크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금융규제 관련 컨설팅 및 법률 지원
4. 국내외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5. 핀테크산업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
 기 위하여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
 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성과와 실적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핀테크산
 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원

2.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핀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시장은 핀테크기업의 육성이나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기본계획 수립)은 통상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수립하므로 추가 비용소요 가능성이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	△	제1호의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 제공 관련 비용(그 외 사항은 기추진 ²⁾)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금융투자과) 문의결과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서울시 유사용역 ³⁾ 을 준용하여 대가를 추정할 시 총 35,000천원 (1회에 한함)정도 소요예상
3	제7조(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 등)	×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기추진사업 ⁴⁾ 으로 확인됨
4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운영 비용이 발생하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통상적인 사례를 토대로 자체 추계함(참고용) ⇒ 총비용 61,249천원 (연평균 12,250천원) 소요예상
5	제11조(표창)	×	통상 시민대상 표창은 부상을 수여하지 않아 비용발생요인 ⁵⁾ 이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고려사항]** 또한 통상 출연연구기관(서울연구원 등) 연구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용역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실점에서는 이를 확실할만한 합리적 정보가 적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
-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에서 현재 핀테크 산업 관련 각종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 서울시 경제실 핀테크산업 관련 예산현황
- 2025년 <서울 핀테크 워크 개최> : 400,000천원
- 2025년 <금융전문인력 양성> : 230,238천원(핀테크아카데미 운영 170,000천원 포함) 등
- [유사사례 준용]**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2025년 <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 35,000천원
⇒ 산업시장 실태 및 통계조사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 사업의 유사성이 있고, 통상적 조사·분석 등 학술용역의 시장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을 준용하였으나, 핀테크 산업의 특수성에 의해 향후 추진될 조사분석 용역비용 실소요액과 추계액간 정합성이 낮을 수 있어 해당 금액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에서 현재 핀테크랩을 운영하여 핀테크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유선문의 및 각종자료)
○ 서울시 경제실 핀테크기업 관련 예산현황
- 2025년 <서울핀테크랩 운영> : 8,044,491천원
- 2025년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 2,068,849천원
○ 안 제7조제1호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제2호 신용보증 또한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해당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부합할 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러한 점에서 볼 경우 기추진사업으로 판단됨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안 제6조(핀테크산업의 육성 등)제1호에 따른 핀테크산업 시장 및 관련 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 제공 관련 비용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 시점에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다만, 서울시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대가를 추정할 경우 **총 35,000천원**(1회에 한함)정도 소요예상
 - 안 제8조(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경제실 금융투자과) 문의결과 현재까지 정해진 바 없어 서울시 통상적 사례를 토대로 자체 추계함

[참고] 핀테크산업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 비용⁶⁾

- 총비용 = **61,249천원**(연평균 12,250천원⁷⁾ × 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위원회 운영비용(안 제8조)		12,283	12,200	12,283	12,200	12,283	61,249

- (위원구성) 최대 구성인 15인 가정⁸⁾(시의원 1인 + 공무원 1인 + 민간위원 13명)
 - (위원임기) 통상적 서울시 위원회 임기를 준용하여 위원 임기는 2년 가정
 - (회의주기) 분기별 1회씩 연 4회⁹⁾ 실시 가정
 - (소요금액) 참석수당 1인 200,000원¹⁰⁾, 업무추진경비 1인 30,000원¹¹⁾, 위촉장 제작비용 1인 5,500원¹²⁾전제
 - (추계기간) 2026년부터 비용 발생,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 연평균 비용 ≒ 12,250천원 (① + ② + ③)

$$\begin{aligned} \text{① 참석수당 비용} &= 10,400\text{천원} \\ &= \text{수당단가} \times \text{지급인원}^{13)} \times \text{연4회} \\ &= 200\text{천원} \times 13\text{명} \times 4\text{회} \end{aligned}$$

$$\begin{aligned} \text{② 업무추진경비} &= 1,800\text{천원} \\ &= \text{경비단가} \times \text{지급인원} \times \text{연4회} \\ &= 30\text{천원} \times 15\text{명} \times 4\text{회} \end{aligned}$$

$$\begin{aligned} \text{③ 위촉장 제작비용} &\approx 83\text{천원}^{14)} \\ &= \text{제작비용} \times \text{인원} \\ &= 5,500\text{원} \times 15\text{명} \end{aligned}$$

6) 위원회 운영비용은 향후 정책수립 과정(민간위원 수, 위원구성, 회의개최 주기, 위촉장 수여주기 등)에서 달라질 수 있어 소요 비용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7) 12,249,8천원이나 절상하여 12,250천원으로 작성
- 8)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서울특별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공무원) +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1명) + 그 외 민간위원(12명) 가정
- 9)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의 운영)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
- 10)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1. 위원회 참석수당

구분	단위	단가	비고
위원회	일당	기본료 : 150,000원 초과 : 50,000원	-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

- 1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및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
 ⇒ 최근 50천원으로 변경(2024. 8. 27.개정)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
- 12)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전원지급 전제)
- 13)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제2항에 따라 공무원(당연직 등)을 제외한 민간위원 13명에게 지급
- 14) 82,500원이나 절상하여 83천원으로 작성(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